

[붙임3] 콘텐츠IP보증 대상 세부요건

구 분	세 부 요 건
기본요건 (요건1~5 모두 충족 요망)	<요건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 * 콘텐츠분야(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 음악, 공연, 캐릭터, 지식정보)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그 밖의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이 콘텐츠IP에 해당됨 ** 단,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
	<요건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IP 활용(보유 또는 이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IP 보유기업 :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 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콘텐츠IP를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는 콘텐츠IP는 대상이 아님) - 콘텐츠IP 이용기업 : 콘텐츠IP의 권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제조업, 서비스업 등)기업. 단, 콘텐츠IP 보유기업의 관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IP 보유자 및 이용자 간 IP 사용(사용권, 실시권 등)계약서, 양수도 계약서, 권리변동등록증, 등록원부 등 ** ①콘텐츠IP 보유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②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기업 ③콘텐츠IP 보유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④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콘텐츠IP 보유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영위하는 기업
	※ [콘텐츠IP보증] 분야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사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 (예시) · 만화(웹툰)→드라마/영화, 드라마→영화, 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 ②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예시)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문구, 완구 등으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의류, 화장품, 식품, 생활 잡화 등 소비재로 연계상품화(머천다이징) · 콘텐츠IP(방송, 영화, 공연, 음악, 게임 등) → 테마파크, 키즈카페, 체험존 등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
	<요건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며, 비즈니스의 형태가 지속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납품 및 하청 용역은 평가 불가 - 샘플 제작, 테스트베드(Test Bed) 등을 포함한 단발성 사업은 평가 불가 - 영화관 운영업(59141),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 전자 게임장 운영업(91221),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91222), 노래연습장 운영업(91223), 골프연습장 운영업(91136) 등은 평가 불가
<요건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행성, 불건전 제품 및 서비스 등은 평가 불가 	
<요건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콘텐츠IP 보유/이용기업의 중복 신청은 불가 	

분야별 추 가 요 건	① 콘텐츠IP 보유기업	○ 직접 제작 및 개발한 콘텐츠IP가 아닐 경우 평가 불가
	② 콘텐츠IP 이용기업	○ 직접 제작이나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않고 유통(도/소매)만 하는 경우는 평가 불가(OEM방식으로 제작/제조/가공하는 경우도 평가 불가)
	③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마케팅 목적으로 콘텐츠IP를 상호에 활용한 경우 등은 평가 불가 ○ 콘텐츠 체험존, 테마파크 등 콘텐츠IP 라이선싱 활용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콘텐츠 체험·이용이 주 목적인 사업의 경우만 평가 가능 ○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및 요식업은 평가 불가

[붙임4] 콘텐츠IP보증 FAQ

FAQ : 아래내용은 신청기업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자, 신용보증기금 전담센터(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 프로젝트에 활용하는 콘텐츠IP 장르에 제한이 있나요?

㉠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출판(e-book), 음악, 공연, 캐릭터, 지식정보 등 10개 분야 콘텐츠IP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 IP와 초상권은 콘텐츠I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 : 콘텐츠IP 증빙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콘텐츠IP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의미하므로 저작권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외 상표권(상표등록원부), 디자인권(디자인등록원부) 등 추가 증빙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IP에 권리변동이 있었던 경우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특허청 등록명부 등 권리변동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외 지적 창작물로서 권리성이 충분히 인정될 만하다고 콘진원과 신보가 판단하는 지식 재산의 경우에는 콘텐츠IP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 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 대상 및 분야에 제한이 있나요?

㉠ 콘텐츠IP 보유기업은 직접 제작 및 개발한 콘텐츠의 저작권 등 IP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으로서 자사(법인기업은 해당 법인, 개인기업은 대표자가 단독으로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지 않아야 함)의 콘텐츠IP를 활용하여 OSMU 콘텐츠를 제작(웹툰→드라마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하거나,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MD제품 등) 또는 서비스를 제공(체험존 등)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콘텐츠IP 이용기업은 이종기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서 콘텐츠IP 관리자와 권리 양도 및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IP 라이선싱 제품을 생산(MD제품 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체험존 등)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콘텐츠IP의 관리자가 법인기업의 대표이사(실제경영자를 포함) 및 무한책임사원 또는 관계기업인 경우에는 대상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의 세부 내용은 [붙임3] 콘텐츠IP보증 업종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 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서 내용 중 검토항목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체크리스트 항목은 신보의 보증심사 체크리스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심사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 항목이라도 저촉되는 경우 보증지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 : 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서 내용 중 확인사항은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 건가요?

㉔ 확인사항은 콘텐츠IP를 활용한 사업화 프로젝트를 보증지원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한 항목이라도 저촉되는 경우 보증지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콘텐츠IP에 대한 권리침해 및 관련분쟁 등이 있을 경우 콘텐츠IP보증을 신청하실 수 없으며, 이후 권리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결정 취소, 불이익 및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Q : 지원 후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특화보증상품에 재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㉔ 콘텐츠평가결과의 유효기간이 6개월인 관계로 평가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프로젝트의 잔여 제작 일정이 1년 이내일 경우 가치평가 결과 통지 이후 3개월 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Q : 기존에 보증(신보, 기보, 재단 등)을 받은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받은 경우, 기업의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보증기금에 한하여 신보와 기보 간에 체결한 중복보증제한협약(2011)에 의해 기보 보증이 있는 기업은 보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 Q : 기존에 기술보증기금 보증 금액이 있습니다. 신보 보증으로 대출하여 기 보증 상환(대환)이 가능할까요?

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 Q : 보증서 신청 시 연대보증(추가적 보증)이 필요한 건가요?

㉔ 2018년 4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자율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금 문화콘텐츠지원센터에 사전 문의요망)

■ Q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기간 또한 설립기간에 포함되나요?

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별개의 독립된 업체이나, 법인전환, 승계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기존 운영기간이 포함됩니다.

■ Q : 공동제작일 경우, 제출한 기업 외 참여기업 또한 심사 대상이 되나요? (공동 제작사의 기보 보증 등)

㉔ 보증심사는 신청기업 위주로 진행되나, 공동제작이 이루어질 경우 신청기업 외 공동 제작자에 대해서도 콘텐츠의 제작 및 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기업 외 공동제작자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제공동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 : 실제 은행권 대출까지 소요기간을 문의드립니다.

- 콘텐츠IP보증의 경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매 월단위로 평가와 추천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한 콘진원 내부 검토를 거쳐 업무일 기준 15일 내외의 평가 기간이 소요되며, 콘진원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추천 통지한 이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현장조사(필수)를 포함한 심사를 실시하여 업무일 기준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금융권 대출이 진행됩니다.

■ Q :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본 사업 선정기업이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업 및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이하 동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舊 은행연합회) 등에 해당 사실이 등록되며(전 금융기관 해당사실 공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용도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 및 폐업 등 고의적으로 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될 수 있습니다.